

[인지세법]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인지세과세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 납부.  
반드시 참고하여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,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 
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(1억원이상~10억원이하 : 15만원 / 10억초과 : 35만원)을 납부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■ 인지세 과세 대상 및 납부 기한

과세대상	납부기한	기재금액	비고
부동산 분양계약	계약체결일	분양대금(총 공급대금)	매수인 보관용 계약서에 첨부
분양권 전매계약	명의변경 승인일	실제 거래가격(분양대금+프리미엄)	

## ■ 세액 ('21.01.01 부터 적용)

기재금액	세액	기재금액	세액
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만원	1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만원	10억원 초과	35만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만원	-	-

## ■ 가산세

법정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	법정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	법정납부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초과
미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100%	미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200%	미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300%

## ■ 인지세(전자수입지) 구매방법 안내

### [온라인 신청시]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 
또는 인터넷 검색창 '전자수입인지' 검색



② 종이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

##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」  
전자수입인지는 발행 형태 및 과세문서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.

- 종이문서를 전자수입인지; 종이문서 첨부에는 출력용 형태의 전자수입인지
- 전자문서를 전자수입인지; 전자문서에 첨부하는 전자적 정보형태의 전자수입인지

\* 예 :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전자문서 등  
\*\*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: 국세청 고시 제2017-11호 참조
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바로가기 >

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

바로가기 >

③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가입을 하여  
회원로그인 접속후 구매 클릭선택

**구매 클릭**

① 구매

1 납부정보 입력    2 입력정보확인    3 구매결과확인 및 발급

① 인지세 과세문서 및 세액을 알려드립니다.

전자수입인지는 인지세 납부용(예: 부동산 등기, 자동차 등록, 위임 및 도급계약 등)과 발행수수료용(예: 인허가/신청/검사 등에 따른 수수료, 증명서 발급 등)으로 구분됩니다.

- 전자수입인지는 구매 후 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구매 후 사용하지 않던 전자수입인지는 우체국, 금융회사(은행 등)를 통해 판매가 가능합니다.(판매 수수료 등 지체된 사항은 '서비스안내 -> 이용방법 안내' 참조)
- 전자수입인지는 해당 구매하여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판매 내역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됩니다.

**인지세 납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**

번호	과세문서 종류	금액	건수	납부금액
1	인	150000	1	150000
2	선택	0	0	0
3	선택	0	0	0
4	선택	0	0	0
5	선택	0	0	0

총 금액 150000 원    총 건수 1

⑥ **확인**    하단 확인 클릭

④ 전자 수입인지 출력  
전자수입인지는  
**최초 1회에 한하여 출력** 되므로  
반드시 프린트 상태 등을  
확인하시고 출력(재발행 불가)



### [오프라인 신청시]

우체국 또는 은행방문  
(방문전 해당 처 확인)

전자 수입인지 구매신청서 작성

전자 수입인지 발급